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시 기술교육원 간 유연한 조직 및 학과 운영을 위해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에 따른 통합 기술교육원 명칭 변경이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별표 명칭란의 “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”을 “서울특별시 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”로 “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”을 “서울특별시 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”로 변경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2. 6. 23. ~ 7. 13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 첨부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3호 단서 중 “남부기술교육원”을 “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남부 캠퍼스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

명칭	위치
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
서울특별시 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
서울특별시 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	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
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길 70가 8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<p>제5조(입학자격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 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교육훈련생. 단, 이 경우에 위탁교육은 서울특별시 <u>남부기술교육원</u>에서 시행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[별표]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명 칭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</td> <td>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</td> <td>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</td> <td>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길 70가 8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</td> <td>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	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	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길 70가 81	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	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	<p>제5조(입학자격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</u>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]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명 칭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</td> <td>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<u>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</u></td> <td>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<u>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</u></td> <td>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</td> <td>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길 70가 8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	서울특별시 <u>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</u>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	서울특별시 <u>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</u>	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	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길 70가 81
명 칭	위 치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길 70가 81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	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																				
명 칭	위 치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<u>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</u>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<u>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</u>	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	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길 70가 81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0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동 조례개정안은 기존 민간위탁된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에 따른 기술교육원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경미함

4. 작성자

일자리정책과 원진희 주무관(02-2133-5458)